

소극행정의 개념 및 사례 공유

I 소극행정의 개념 및 유형

□ 소극행정의 개념

- 임직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기관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

□ 소극행정 유형 및 판단기준(예시)

분 류	정의 및 판단기준
적당 편의	<p>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,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</p> <p>◆ 판단기준<예시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·지식·의견 등을 파악하지 않고 처리하는 행태 · 규정을 따르거나 고려하지 않고, 민원인 등과 타협·절충으로 대충 처리 · 기타 사후 조치나 소관·연관된 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태
업무 태만	<p>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</p> <p>◆ 판단기준<예시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, 관리·감독 소홀, 낙장 대응 등의 행태 · 민원신청·신고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접수·처리하지 않는 행태 · 기타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,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
탁상 행정	<p>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</p> <p>◆ 판단기준<예시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종전 지침이나 현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전임자의 업무처리 방식을 그대로 답습 · 보다 효율적·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편의상 관례대로 처리 · 기타 업무처리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기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
기타 관중심 행태	<p>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,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</p> <p>◆ 판단기준<예시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민에게 권위적인 자세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요구를 하는 행태 · 업무처리에 따르는 비용을 국민(민원인 등)에게 떠맡기거나,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국민(민원인 등)이 대신 준비하거나 처리하게 하는 것 · 규정·예산 등을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해석·활용하거나, 법·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 · 기타 자의적인 업무처리로 국민이나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업무행태

II

타기관 소극행정 유형별 징계사례 [적극행정 운영지침 발췌]

분 류	주요 사례
적당편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○○업체의 정품 부품사용 여부 확인 관련 현장 조사시 기존에 신고된 부품과 동일한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 절차가 번거롭고 건 본만 확인하였을 때 이상이 없었다는 이유로 신고된 부품과 동일하다고 임의로 판단 → 견책 · 물품 A의 부속품인 물품 B의 설계·제작시 물품 A와 그 규격이 실제로 일치하는지 사전에 실측하는 작업이 필요하였으나, 해당 절차를 누락하고 제작을 진행하였음. 결국 제작된 부품이 서로 맞지 않아 추가 작업을 실시하였고, 비용도 추가로 발생 → 정직2개월
업무해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접수된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 간의 협의를 거쳐 기관장이 공무원 A에게 일 단 해당 사건을 배정하고 1차적으로 관련 조사를 하도록 직접 지시하였으나, 공무 원 A는 본인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상당기간 미처리 → 견책 · 공무원 A는 B업체의 부지매립 관련 협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, 한 달 이내 에 그 협의를 종결토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었음. 그러나 A는 다른 업무가 바 뵈는 이유로 이를 부작위하였고, 결국 매립 일정이 지연되면서 B업체는 ○백 만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고, 이에 대해 B업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공무원 A 는 B업체를 방문하여 해당 소송건을 취하토록 요청 → 감봉1개월
탁상행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A업체와의 보수용역 계약 체결시 개정된 법령으로 해당 용역업체 직원의 노임 단가 등을 갱신하여야 했으나, 개정된 관련 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개정 전 단가를 기준으로 작성된 전임자의 서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후에 업체로부터 항의를 받 는 등 민원을 야기 → 감봉1개월 · A는 정부 인가 업체로 등록하고자 공무원 B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으나, 공 무원 B는 법령 개정 전에 확립되었던 기존의 해석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A 업체가 제출한 신고 민원을 계속해서 반려 처리함. 후에 A업체가 공무원 B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감사실에 이를 제보하여 자체 감사 절차가 진행되자 해 당 민원에 대한 접수증을 발급 → 감봉1개월
기타 관중심 행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B는 공무원 A에게 ○○회사의 위법 사항에 대해 신고하였으나 공무원 A는 바쁘다 는 이유로 해당 사건에 대한 처리를 계속 지연하였고, 이에 B가 항의하자 공무원 A는 불손하게 응대하여 B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담당자를 교체해 달라는 민원 을 야기 → 감봉1개월 · 공무원 B는 본인이 직접 검사해야 하는 정부인가 기관 요건의 충족 여부를 A업체 가 스스로 직접 검사토록 안내하였음. A업체는 해당 검사를 다른 외주업체에 의뢰하여 부당하게 추가비용이 발생 → 감봉1개월

Ⅲ

신용보증기금 소극행정 신고사례 [’19. 1월 ~ ’20. 6월]

분 류	주요 사례
적당편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보증기업에 대해 부실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「신용보증부실관리요령」제4조 (부실관리) 제1항에 따라 3영업일 이내에 채무관계자의 재산 및 보증기업의 영업현황, 부실발생원인, 부실정상화 가능성을 검토하여 부실제외, 부실유보, 부실처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적극적인 검토 과정 없이 부실처리하였고, 이후 보증기업이 부실제외 경우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부실정상화를 요청하였으나, 정상화 검토를 미흡하게 하여 기업 활동에 불편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 → 부실 정상화 재검토 권고
업무해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보증상담 시 처음부터 보증지원을 검토하지 않을 것처럼 소극적인 업무처리를 하였고, 상담과정에서 불친절하게 응대하였으며 그에 따라 담당자 변경 요청 → 재상담 권고

끝.